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박 주 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41
----------	---------

발의연월일 : 2023. 2. 24.

발 의 자 : 박주선, 이충현, 조기만,
고찬양, 강선영, 한상욱,
최세진, 홍재희, 박학용,
정정희, 전철규, 정장훈,
김현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
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
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의 총칙(안 제1조 ~ 제7조)

나. 탄소중립의 이행 목표 및 계획(안 제8조 ~ 제11조)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 제17조)

라. 온실가스 감축 시책(안 제18조 ~ 제25조)

마. 기후위기 적응 시책 (안 제26조, 제27조)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안 제28조 ~ 제34조)

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의 폐지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협조부서 : 녹색환경과

다. 입법예고 : 2023. 2. 27. ~ 3.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과정에 기후정의 원칙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8조(온실가스 감축 목표) ①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만큼 감축하는 것을 제9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사용실태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과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4.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강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표 등) ①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 및 제26조에 따른 확정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1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 ① 구청장은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다.

③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과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탄소중립 관련 시민단체 또는 민관협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구민의 의견 수렴과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5. 제26조에 따른 강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조례·제도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구민 참여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및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

화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민·관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별도로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8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순환경제의 활성화) 구청장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선별·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

· 활용에 관한 사항

5. 구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

제20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시설·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사업자 및 국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등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26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물관리, 생태계, 건강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2. 사업의 목표·내용·규모·범위
3. 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28조(구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구민참여를 보장하고 구민의 정책 제안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지역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영 제6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이 조에서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 홍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과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포상)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3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4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

는 국의 국장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

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